

『우루과이 라운드』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성훈/중앙대학교 교수

I. 이미 타결된 UR 협상

GATT의 여덟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인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UR)는 약육강식의 강자만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름만의 협상이 돼가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그 협상내용과 규정이 바뀌어져 온 것이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 8월 27일부터 열린 제24차 UR 농산물 협상그룹 회의는 아예 GATT의 농산물 관련조항인 제11조(수입수량 제한조항), 제16조(보조금 조항), 제18조(경제개발의 정부지원 조항), 제19조(긴급 수입제한), 제20조(일반적 예외조항)을 그동안의 드류의장 초안(실제론 미국 정부와 농산물 수출국들의 케언즈그룹 초안) 정신에 맞춰 뿌리채 개정코자 지금 제네바에 모여 있다. 만일 GATT의 농업관련 조항이 바뀌어진다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BOP(국제 수지위원회) 제18조국을 졸업하면서 얻어 놓았던 1997년까지의 전 품목 완전개방 유예기간마저 실효될지 모른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농산물과 식량시장이 과잉되면서 재고가 누적되고 미국, EC 등 선진 각국의 농업생산 및 수출보조금이 정부 재정을 압박함에 따라 1986년 9월 푼타 델 에스테 각료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이다. 그런데 그동안 15개 분야에 관한 수습차례의 회담 가운데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 정부대표는 사실상 미국 등 케언즈그룹이 요구한대로 한개 의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항목에 이미 동의해준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즉, ① 국내보조금 철폐, ② 국경보호(관세 및 비관세 보호)를 모두 국제기준의 관세화, ③ 수출보조금의 철폐, ④ 식품위생 및 검역기준의 국제화에 대하여 작년(1989)년 4월 고위급 무역협상 위원회(TNC)와 지난 7월의 TNC에서 이미 합의해준 거나 다름없다. 다만 식량안보와 환경 및 전통보호 등 비교역적 고려에 의한 쌀, 쇠고기등 소수 주요작목만 수입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미 드류의장의 초안은 지난 7월의 고위급 TNC 모임에서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는 데도 우리 국민에게는 아직 완전 타결이 안된 사실만 강조됐을 뿐이다. 드류의장의 초안대로라면 앞서 소개한 4개 항목은 물론 비교역적 이유에 의한 수입제한도 할수 없게 된다. 지금 이순간 열리고 있는 24차 UR 회의에선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각국이 수입 개방과 보조 철폐를 할것인가에 대한 Country List와 Offer List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느냐를 아울러 토의한다. 바꾸어 말하여 이미 수입제한과 보조금의 철폐 그리고 국내 농업보호 포기는 기정 사실화한 것이다. 드류의장 초안에 사실상 합의해준 결과이다. 그리하여 금년말의 각료급 TNC 회담에서 GATT 8차 협상을 종결 선언하도록 예정된 셈이다. 결국

EC와 미국 등 강대국들의 미세한 이해의 절충과정만 남아 있는 셈이다.

II. 이중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

문제는 우리 정부 당국의 국내용과 국제용의 서로 다른 태도, 즉 이중적인 양면성이다. 그 단적인 예가 제네바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외교관들, 특히 UR 회의의 한국측 공식 대표들의 자세는 자못 적극적이다. 이미 어떤 특명을 서울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나 처음부터 UR 회의에 대단히 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드쥬 초안에도 이렇다할 반대를 나타내지 않았다. 심지어 농림수산부에서 참가한 대표들의 발언 준비 내용을 순화시켜 미국 및 드쥬의장 초안에 부응케하는 역할마저 감행하고 있다. 경제기획원(EPB)역시 비슷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UR 회의 자체가 다국적 자본(기업)과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 정부와의 정경유착의 결과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기묘한 태도는 공산물 수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여도 틀림이 없다. 수출주도의 공업화 정책에 희생되어 생산성이 낮아진 국내 농업부문은 이제 거꾸로 수출주도 공업 정책의 걸림돌로 인식된 것이다. 결국은 국내 농업, 농촌, 농민 부문의 몰락은 불을 보듯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UR 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피해자는 1차적으로 국내 농업부문이 될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피해는 큰파도가 되어 국민경제 전반을 뒤덮을 것 또한 확실하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도시문제, 환경, 생태계 파괴, 국민 식량과 생존권의 불안정, 유해수입 상품의 안전성 문제, 신선 식료품 공급의 불안정성 등등 이 모두가 국내 농업 기반의 파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당국은 UR 협상 타결을 이미 전제한 대책으로서 다만 농업피해 보상에 국한하고 있다. 그것도 93년까지 겨우 5천억원을 책정하고 있어 한 두개 품목의 손실액을 보전할까 말까 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순간도 25개의 홍보반을 조직하여 전국 농촌 곳곳에 내보내고 있다. 또 농협이 직영하는 『농민신문』(90.8.9)은 출처를 정부투자 연구원으로 하여 마치 그동안 농민보조가 천문학적인 숫자였던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민들은 지금 그토록 터무니 없는 숫자 부풀리기 발표가 무슨 저의 때문인지 정부당국과 농민신문이라는 곳에 계속 묻고 있는 것이다.

III. 상반기 대처방안

1. 무엇보다도 먼저 각지역 농민단체(농·축·수협 포함)들은 해당지역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오는 정기 국회에서 비록 다자간 협상에 의한 UR 협상결과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존권과 안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입법 결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금년말 UR 각료급 무역 협상회의에서 어떤 협정 또는 선언이 결의되더라도 우리나라 농업·농민·소비자 국민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해야 유효하도록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조치가 이미 스위스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음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이상과 같은 입법 활동을 해야할 이론적인 배경은 다음을 들수 있다.

첫째, UR 협상은 당초(1986.9) Punta Del Este에서 각국 각료회의 결과 선언한 『협상이익의 균등반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

둘째, 각국의 농업 발전 단계별 기반조건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동협상이 우리나라의 전통, 관습, 문화, 그리고 소농구조와 자원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끝으로, 남북한이 아직 『전쟁 상태』로 대결하고 있는 한국 정치사회의 특수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입법 활동은 금년초에 개정할 바 있는 대외 무역법을 고치거나 새로이 입법을 하여 민간기구로서 『농산물 무역위원회』를 별도로 설립, 이미 85%나 개방된 농산물 수입에 따른 산업피해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상공부 산하의 『무역위원회』에는 극히 최근 단한명의 농업전문가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을 뿐 산업피해가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있음에도 전문성과 해결의지의 빈약, 그리고 수출 정책과 일반 상공시책에 지나치게 압력과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래서 한 품목의 산업피해 판정을 받는데 최소 6개월이나 경과되어 농축산업의 특수성과 계절성을 망각한 늦장 결정이 내려져 이미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미국도 80년대 들어 국회가 미통상법(속칭 Super 301조)을 강화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보복 또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나라를 비롯농산물 수입국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생각해 보라. 현 무역위원회의 구성과 실력으로는 현재 수입개방되어 무자비하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외국 농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출까지 얼마만큼 자국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독으로 『농산물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게 해야 한다.

3. 국회가 할 일이 또 있다. 국내 입법 활동에까지 외국이 간섭한다는 것은 내정 간섭이며 전통 관습 문화 침해에 해당한다. 아무튼 그동안 EC가 20여년간 실시해온 공통농업정책(CAP)에 따른 과징금(Levy) 제도를 모든 수입 농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UR 협상정신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반론도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협상추세로 볼 때 선진국의 보조금 제도는 일시에 철폐될 것 같지 않다.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과징금 제도를 창설, 존속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상과 식품개발들의 무사려한 외국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을 규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해태, 롯데, 오투기식품(주)를 비롯 재벌 그룹들이 외국서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제조한 식품들을 마치 국내에서 만든 것처럼 위장 수입하고 있는 것부터 규제 내지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하는 식품이라도 외국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4. 국내 농업의 생산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농업자재, 축산기기, 원료 농산물, 사료생산 등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제의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수출산업의 원료 및 기자재 도입시에 주는 혜택을 그대로 수입대체 산업인 농축수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국산중 비싼 것은 농민단체가 직접 수입하여 농어민에게 염가로 공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국내 농업, 특히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신선 식품의 수급과 출하를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유통구조 개선이다. 명실공히 농축수협이 유통협동조합의 구실을 할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의무규제를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6. 지역 농민들이 저장사업, 가공사업, 유통 판매 무역업에 개인으로 참여 하거나 단체로 조직화 하는데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재 보사부가 85년 편법으로 뺏아간 『가공식품 제조 허가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재통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년 7월1일부터 폐지한 가공식품의 제조년월일 표시 의무 조항을 한국적 가공식품의 성격을 고려해 복원하여야 한다.

7.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계속 4년간 흑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이유로 한국은 GATT BOP의 18조 국가를 졸업하고 11조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지난 2년간 급작스런 수입개방을 당했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국이 되어 있다. BOP 11조 국으로서의 의무를 해제하는 대안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획원이 추진하고 있는 OECD 가입 추진 기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8. 수입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검역 검사 업무를 미국등 선진국 처럼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통합하여 수입식품에 대하여 미국처럼 원산지 생산단계로부터 재배, 수확, 포장, 수송, 가공, 유통, 수입 단계를 모두 일관되게 감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을 아직도 황색지대(Yellow Zone)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정부에 대하여 이 불명예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경고해야 한다.

9. 대대적인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전체 경제는 선진화를 지향하면서 농업기반은 후진국인 중국수준에도 못 미치는 농업조건으로 국내 농업생산성이 낮은 것만 탓해서도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작물재해보험을 정식으로 시작해야 한다. 말로만 “시험 실시” 운운하며 벌써 10년의 세월을 끌어 왔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 농어민 의료보험제 역시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것을 다시 되살려 대폭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농어민 연금제도 역시 보사부의 사보타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농어민의 특수성을 살려 독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지지는 미국등

선진국형으로 금융, 자재공급, 유통 및 수출지원에 쪼여 명실상부하게 농어민이 수혜자가 되게 개선 확충해야 한다. 농업보조는 선진국 농민이 우리 농민보다 몇배 더 받고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10. 끝으로 농어민 단체, 농업관련 기구와 인원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 전국의 농민수는 지난 10년사이 5백만명이나 줄어들어 이제 6백 70만이 채될까 말까인데 농협 임직원은 그동안 만여명이 늘어 왔고 새로이 중앙기구와 직급을 늘리고 있다. 또 농촌진흥공사가 새로 탄생되어 군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인력과 국가예산을 축내고 있다. 그리하여 농진청, 농진공, 농축수협 등 그 직원수는 정부 전체 직원수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차라리 농어민에 되돌려 복지자금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는 일부 농어민 자생단체들의 비판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에 농림수산부가 주관한 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안된 바 있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농어촌 발전 대책 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여 이상의 모든 문제와 재원 염출방안(예: 농촌 발전세 제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 교통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직접 그 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루어 보아 그 근본에 해당하는 『농발 대책 위원회』는 지금쯤 정부구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농민의 대응방향

권종대 / 전국농민회